8.2 작업 전 안전대책

- (1)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찾아낸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- (가)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근에 인화성 물질있거나 가연성 가스가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.
- (나)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기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. 이 때 통풍이나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2)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작업허가서 의 승인은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신청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공사부서 책임자가 승인하고, 작업을 할 지역의 관리감독 자가 발급한다.
- (3) 화기작업 시작 전에 인화성 가스 농도를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화기작업 의 열 혹은 복사열 등으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정 기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용농도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만일 가스농도가 허용농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
8.3 우레탄폼 원료 원액 관리 안전조치사항

- (1) 우레탄폼 원료 제조자가 제공하는 시공 매뉴얼(설명서)에 따른 각 원료별로 정해진 온도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 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제조자가 정한 온도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예열 시 과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제조자가 정한 온도조건 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확인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참조 하여야 한다.
- (2)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작업 장소와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,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, 발포 작업 장소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하여 최소량만을 보관하여야 한다.